

[부 록] 보험분쟁 해결의 비용효과 분석

1. 기본 소송 모형

분쟁조정제도를 상정하지 않은 경우, 양 분쟁당사자에게는 소송과 화해의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주어진다. 원고가 재판으로부터 얻을 순기대이익(net expected return)은 아래와 같으며 이 값이 양(+)의 값을 갖는 경우 원고는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존재한다.

$$E_{\pi}^T = p_{\pi}x - (1 - p_{\pi})(t'_{\pi} + t'_{\delta}) - t_{\pi}'' \quad (1)$$

$$\left[\begin{array}{l} x : \text{재판상 판결금액 } (x > 0) \\ p_i : \text{원고가 당사자 } i \text{의 의견상 재판에서 이길 확률} \\ \quad \text{여기서 } i \text{는 원고에 대해서는 } \pi, \text{ 피고에 대해서는 } \delta \\ t'_i : \text{당사자 } i \text{의 소송비용 중 패자부담비용} \\ t_i'' : \text{당사자 } i \text{의 소송비용 중 당사자부담비용} \end{array} \right.$$

피고의 기대비용(expected cost of trial) 역시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_{\delta}^T = p_{\delta}x + p_{\delta}(t'_{\pi} + t'_{\delta}) + t_{\delta}'' \quad (2)$$

원고의 순기대이익보다 피고의 기대비용의 크기가 큰 경우 화해의 성립이 가능하므로, 식 (1)과 식 (2)로부터 잠재적인 화해금액이 존재하는 영역을 구할 수 있다.

$$\begin{aligned} p_{\pi}x - (1 - p_{\pi})(t'_{\pi} + t'_{\delta}) - t_{\pi}'' &\leq s \leq p_{\delta}x + p_{\delta}(t'_{\pi} + t'_{\delta}) + t_{\delta}'' \\ \therefore (p_{\pi} - p_{\delta})x &\leq (t'_{\pi} + t'_{\delta})(1 - p_{\pi} + p_{\delta}) + (t_{\pi}'' + t_{\delta}'') \end{aligned} \quad (3)$$

식 (3)의 우변을 $t = t' + t''$ 를 이용하여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 t_{\pi}' + t_{\pi}'' + t_{\delta}' + t_{\delta}'' - (p_{\pi} - p_{\delta})(t_{\pi}' + t_{\delta}') \\ &= t_{\pi} + t_{\delta} - (p_{\pi} - p_{\delta})(t_{\pi}' + t_{\delta}') \end{aligned}$$

여기서 $(p_{\pi} - p_{\delta})(t_{\pi}' + t_{\delta}')$ 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이후의 분석에 있어서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모형의 단순화를 위하여 생략한다면, 식 (3)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p_{\pi} - p_{\delta})x \leq t_{\pi} + t_{\delta} \quad (3)'$$

식 (3)'는 구간 $[E_{\pi}^T, E_{\delta}^T]$ 의 크기가 양(+)의 값을 갖는 경우로서 이 구간에 속하는 화해금액(s)을 양 당사자가 교환함으로써 소송 전 화해가 가능하다. 분석의 단순화를 위하여 이후 이어질 분석에서는 양 당사자가 교환하는 화해금액(s)의 크기는 판결금액(x)과 항상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2. 사후적 분쟁조정에서의 소송모형

다양한 분쟁해결방법이 존재하는 경우 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의 편이를 위하여 분쟁해결방법의 순기대가치를 정의한다. 분쟁해결방법의 순기대가치는 '원고의 순기대이익에서 피고의 기대비용을 차감한 값'으로, 이 값이 클수록 파레토 우월한 분쟁해결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즉각적 화해와 소송을 비교하면, 화해의 순기대가치는 피고가 지급하는 금액과 원고가 받는 금액은 동일하므로 '0'이 된다.

$$E_{\pi}^S - E_{\delta}^S = s - s = 0 \quad (4)$$

다음으로 소송의 순기대가치는 예상 판결금액의 차액에서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E_{\pi}^T - E_{\delta}^T = (p_{\pi} - p_{\delta})x - (t_{\pi} + t_{\delta}) \quad (5)$$

화해의 순기대가치가 소송의 순기대가치보다 더 큰 경우 화해가 소송보다 파레토 우월하므로, 양 당사자는 화해를 선택하고 그 결과 소송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_{\pi}^S - E_{\delta}^S = s - s = 0 > E_{\pi}^T - E_{\delta}^T = (p_{\pi} - p_{\delta})x - (t_{\pi} + t_{\delta})$$

다음으로 분쟁조정제도의 예측력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행태 및 유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가. 분쟁조정이 재판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경우

1) 구속적 분쟁조정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분쟁이 제기된 경우 양 당사자는 i) 즉각적 화해, ii) 즉각적 소송, 그리고 iii) 분쟁조정을 선택할 수 있다.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가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의 크기는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판결액의 크기와 동일하다고 하자. 현재 분쟁조정에서 승소할 확률과 재판에서 승소할 확률은 동일하므로($p_i = q_i$), 원고의 순기대이익(E_{π}^B)과 피고의 기대비용(E_{δ}^B)은 각각 다음과 같고,

$$E_{\pi}^B = p_{\pi}x - a_{\pi} \quad (6)$$

$$E_{\delta}^B = p_{\delta}x + a_{\delta} \quad (7)$$

구속적 분쟁조정제의 순기대가치는 식 (6)에서 식 (7)을 뺀 값이 될 것이다.

$$E_{\pi}^B - E_{\delta}^B = (p_{\pi} - p_{\delta})x - (a_{\pi} + a_{\delta}) \quad (8)$$

양 당사자가 즉각적 화해를 선택할지 구속적 분쟁조정을 선택할지는 각 분쟁해결방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순기대가치'의 크기에 의존한다. 즉각적인 화해로부터 얻는 순기대가치는 항상 '0'이므로<식 (4)>, 구속적 분쟁조정제의 순기대가치 <식 (8)>가 양(+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구속적 분쟁조정을 선택하고, 음(-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즉각적 화해를 선택하여 분쟁이 해결된다.

구속적 분쟁조정제도의 순기대가치는 항상 즉각적 소송보다 크므로, 구속적 분쟁조정제도는 항상 즉각적 소송보다 파레토 우월하며,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_{\pi}^B - E_{\delta}^B = (p_{\pi} - p_{\delta})x - (a_{\pi} + a_{\delta}) > E_{\pi}^T - E_{\delta}^T = (p_{\pi} - p_{\delta})x - (t_{\pi} + t_{\delta})$$

$$\therefore a_{\pi} + a_{\delta} < t_{\pi} + t_{\delta}$$

2) 비구속적 분쟁조정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비구속적 분쟁조정하에서 양 당사자는 i) 즉각적 화해, ii) 즉각적 소송, iii) 분쟁조정 후 소송, 그리고 iv) 분쟁조정 후 화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원고가 비구속적 분쟁조정에서 승리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재판 시 원고의 승소를 예측한다($p_{\pi} = p_{\delta} = 1$). 따라서 비구속적 분쟁조정 후 소송과 화해의 순기대가치는 각각 아래와 같다.

$$E_{\pi}^T - E_{\delta}^T = -(a_{\pi} + a_{\delta}) - (t_{\pi} + t_{\delta})$$

$$E_{\pi}^S - E_{\delta}^S = -(a_{\pi} + a_{\delta})$$

그러므로 분쟁조정 후 화해를 하는 것이 분쟁조정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파레토 우월하므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소송은 제기되지 않는다.

$$E_{\pi}^T - E_{\delta}^T = -(a_{\pi} + a_{\delta}) - (t_{\pi} + t_{\delta}) < E_{\pi}^S - E_{\delta}^S = -(a_{\pi} + a_{\delta})$$

원고가 비구속적 분쟁조정에서 패배하는 경우($p_{\pi} = p_{\delta} = 0$), 분쟁조정 후 소송의 순기대가치가 음(-)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E_{\pi}^T = -(a_{\pi} + t_{\pi}) < 0$), 원고는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없다. 따라서 소송은 발생하지 않고 분쟁은 그대로 종료된다. 양 당사자가 즉각적 화해를 선택할지, 비구속적 분쟁조정을 선택할지 역시 각 분쟁해결방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순기대가치'의 크기에 의존한다. 예측력이 완벽한 경우 비구속적 분쟁조정의 순기대가치는 다음과 같다.

$$\text{원고의 순기대이익} : E_{\pi}^N = p_{\pi}s - a_{\pi} \quad (9)$$

$$\text{피고의 기대손실} : E_{\delta}^N = p_{\delta}s + a_{\delta} \quad (10)$$

$$\text{순기대가치} : E_{\pi}^N - E_{\delta}^N = (p_{\pi} - p_{\delta})s - (a_{\pi} + a_{\delta}) \quad (11)$$

즉각적 화해로부터 얻는 순기대가치는 항상 '0'이므로 <식 (4)>, 비구속적 분쟁조정의 순기대가치 <식 (11)>가 양(+)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비구속적 분쟁조정을 선택하고, 음(-)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즉각적 화해를 선택하여 분쟁이 해결된다. 화해금액(s)이 법원의 판결금액(x)과 같다면, 즉각적 소송을 선택하는 것은 비구속적 분쟁조정을 선택하는 것보다 항상 파레토 열등하므로, 즉각적 소송은 발생하지 않는다.

$$E_{\pi}^N - E_{\delta}^N = (p_{\pi} - p_{\delta})x - (a_{\pi} + a_{\delta}) > E_{\pi}^T - E_{\delta}^T = (p_{\pi} - p_{\delta})x - (t_{\pi} + t_{\delta})$$

나. 분쟁조정이 재판결과에 대한 예측력을 전혀 가지지 않는 경우

1) 구속적 분쟁조정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사후적 분쟁조정에서 분쟁조정 결정에 구속력이 부여된 경우, 양 당사자는 i) 즉각적 화해, ii) 즉각적 소송, iii) 구속적 분쟁조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즉각적 화해'의 순기대가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상 '0'이며, '즉각적 소송'의 순기대가치는 기본소송모형과 동일하다.

$$E_{\pi}^T - E_{\delta}^T = (p_{\pi} - p_{\delta})x - (t_{\pi} + t_{\delta}) \quad (5)$$

분쟁조정과 재판의 결과가 서로 독립적이므로($p_i \neq q_i$), '구속적 분쟁조정'의 순기대가치는 다음과 같다.

$$\text{원고의 순기대이익} : E_{\pi}^B = q_{\pi}x - a_{\pi} \quad (12)$$

$$\text{피고의 기대손실} : E_{\delta}^B = q_{\delta}x + a_{\delta} \quad (13)$$

$$\text{순기대가치} : E_{\pi}^B - E_{\delta}^B = (q_{\pi} - q_{\delta})x - (a_{\pi} + a_{\delta}) \quad (14)$$

'즉각적 화해'의 순기대가치가 '0'이므로 '즉각적 소송'의 순기대가치 <식 (5)>와 '구속적 분쟁조정'의 순기대가치 <식 (14)>가 동시에 음(-)의 값을 가져야 화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순기대가치의 크기에 따라 '즉각적 소송'이나 '구속적 분쟁조정'이 발생한다.

2) 비구속적 분쟁조정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사후적 분쟁조정에서 분쟁조정 결정에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는 i) 즉각적 화해, ii) 즉각적 소송, iii) 분쟁조정 후 소송, 그리고 iv)

분쟁조정 후 화해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비구속적 분쟁조정이 재판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 조정을 거친 당사자들이 예상하는 승소확률은 변화하지 않는다. 분쟁조정 결과와 재판의 결과와 완전히 독립적이므로 분쟁조정의 결과에 관계없이 화해나 소송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분쟁조정 후 화해나 소송은 비용구조상 '즉각적 화해'나 '즉각적 소송'보다 항상 파레토 열등하기 때문에 '즉각적 화해'나 '즉각적 소송'이 선택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구속적 분쟁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사전적 분쟁조정에서의 소송모형

사전적 분쟁조정제도 하에서 당사자들이 즉각적 소송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양 당사자는 분쟁이 발생하면 i) 즉각적 화해, ii) 분쟁조정 후 화해, 또는 iii) 분쟁조정 후 소송을 선택할 수 있다.

비구속적 분쟁조정 후 화해와 소송의 순기대가치는 각각 다음과 같다.

(비구속적 분쟁조정 후 화해의 순기대가치)

$$\text{원고의 순기대이익} : E_{\pi}^S = s - a_{\pi} \quad (15)$$

$$\text{피고의 기대손실} : E_{\delta}^S = s + a_{\delta} \quad (16)$$

$$\text{순기대가치} : E_{\pi}^S - E_{\delta}^S = -(a_{\pi} + a_{\delta}) \quad (17)$$

(비구속적 분쟁조정 후 소송의 순기대가치)

$$\text{원고의 순기대이익} : E_{\pi}^T = p_{\pi}x - t_{\pi} - a_{\pi} \quad (18)$$

$$\text{피고의 기대손실} : E_{\delta}^T = p_{\delta}x + t_{\delta} + a_{\delta} \quad (19)$$

$$\text{순기대가치} : E_{\pi}^T - E_{\delta}^T = (p_{\pi} - p_{\delta})w - (t_{\pi} + t_{\delta}) - (a_{\pi} + a_{\delta}) \quad (20)$$

가정적으로 즉각적인 소송의 순기대가치가 음(-)의 값을 갖는 경우 비구속

적 분쟁조정 후 소송의 순기대가치도 음(-)의 값을 가지므로, 분쟁조정 후 화해는 분쟁조정 후 소송보다 항상 파레토 우월하며,

$$(p_{\pi} - p_{\delta})x - (t_{\pi} + t_{\delta}) < 0$$

$$\therefore (p_{\pi} - p_{\delta})x - (t_{\pi} + t_{\delta}) - (a_{\pi} + a_{\delta}) < - (a_{\pi} + a_{\delta}),$$

동시에 즉각적 화해는 비구속적 분쟁조정 후 화해보다 파레토 우월하다.

$$E_{\pi}^S - E_{\delta}^S = s - s = 0 > - (a_{\pi} + a_{\delta})$$

‘즉각적 화해’가 가장 높은 순기대가치를 제공하므로, 양 당사자는 ‘즉각적 화해’를 선택한다. 분쟁조정 후 소송의 순기대가치가 양(+)의 값을 갖는 경우, 양 당사자는 항상 ‘분쟁조정 후 소송’을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분쟁조정 후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있는 경우에만 비구속적 분쟁조정이 선택된다.

가. 분쟁조정이 재판의 결과를 완전히 예측하는 경우

소송 전 강제되는 비구속적 분쟁조정제도가 재판의 결과를 완전히 예측하면, 원고는 자신이 비구속적인 분쟁조정제도로부터 얻는 순기대이익($E_{\pi}^N = p_{\pi}s - a_{\pi}$)이 양(+)의 값을 가질 때에만 분쟁조정을 이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에서 원고가 승소해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되거나, 원고가 패소하는 것으로 분쟁이 종료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즉각적 화해가 발생한다.

나. 분쟁조정이 재판의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분쟁조정의 결과로부터 재판 결과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으므로, 분쟁조정의 결과에 관계없이 소송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분쟁조정 후 소송과 즉각적 화해 가운데 하나를 이용한다.

비구속적 분쟁조정이 소송 전 강제되고 분쟁조정이 재판의 결과를 전혀 예측

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조정 후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판결액의 크기 ($E_{\pi}^T = p_{\pi}s - a_{\pi} - t_{\pi}$)가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이 발생한다. 이때 분쟁조정 후 소송의 순기대가치가 양(+)의 값을 가지면 분쟁조정 후 소송이 발생한다. 한편, 사전적 분쟁조정제도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의 순기대가치($E_{\pi}^N - E_{\delta}^N$)가 음(-)의 값을 갖고, 이 값이 분쟁조정을 거친 후 재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순기대가치($E_{\pi}^T - E_{\delta}^T$)보다 큰 경우 즉각적 화해가 발생한다.

$$(p_{\pi} - p_{\delta})x - (t_{\pi} + t_{\delta}) - (a_{\pi} + a_{\delta}) < (q_{\pi} - q_{\delta})x - (a_{\pi} + a_{\delta}) < 0$$

4. 편면적 분쟁조정에서의 소송모형

가. 편면적 분쟁조정이 사후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기본적인 구조는 '구속적인 분쟁조정이 사후적으로 선택된 경우'와 유사하다. 그러나 분쟁조정 후 소송으로 발전 가능한지 여부가 원고 일방의 의사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1) 분쟁조정이 재판의 결과를 완전히 예측하는 경우

재판의 결과가 분쟁조정의 결과와 동일하므로 분쟁조정에서 원고가 승리하는 경우 화해가 성립하고, 분쟁조정에서 원고가 패배하는 경우에는 분쟁이 종료된다. 그리고 분쟁조정의 운영비용이 소송의 운영비용보다 낮으므로 분쟁조정은 항상 소송보다 파레토 우월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화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조정만 발생하며 소송은 발생하지 않는다.

2) 분쟁조정이 재판의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조정과 재판의 결과가 서로 독립적이므로($p_i \neq q_i$), 분쟁조정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분쟁조정 순기대가치는 아래와 같다.

$$\text{원고의 순기대이익} : E_{\pi}^N = q_{\pi}x - a_{\pi}$$

$$\text{피고의 기대손실} : E_{\delta}^N = q_{\delta}x + a_{\delta}$$

$$\text{순기대가치} : E_{\pi}^N - E_{\delta}^N = (q_{\pi} - q_{\delta})x - (a_{\pi} + a_{\delta})$$

재판에 대한 예측력이 전무한 분쟁조정이라도 원고는 분쟁조정의 결과를 수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분쟁조정이 소송보다 더 큰 순기대가치를 제공하는 경우 원고는 분쟁조정을 이용할 유인이 있다. 한편, 분쟁조정에서 원고가 패배하는 경우에는 소송과 분쟁종료, 그리고 당사자 간 화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우선 원고가 분쟁조정 후 소송으로부터 양(+의) 순기대 수익을 얻고($E_{\pi}^T = p_{\pi}x - a_{\pi} - t_{\pi} > 0$), 분쟁조정 후 소송의 순기대가치가 양(+의) 값을 가질 때에는 분쟁조정 후 소송이 발생한다. 반대로 소송의 순기대가치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E_{\pi}^T = p_{\pi}x - a_{\pi} - t_{\pi}$, $E_{\delta}^T = p_{\delta}x + a_{\delta} + t_{\delta}$] 사이에 속하는 화해금액을 교환하고 분쟁조정 후 화해가 성립된다.

즉각적인 화해는 분쟁조정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가 얻는 순기대이익이 양(+의) 값을 갖고, 분쟁조정의 순기대가치와 분쟁조정 후 소송의 순기대가치가 동시에 음(-)의 값을 갖는 경우에 발생한다.

$$E_{\pi}^N - E_{\delta}^N = (q_{\pi} - q_{\delta})x - (a_{\pi} + a_{\delta}) < 0,$$

$$E_{\pi}^T - E_{\delta}^T = (p_{\pi} - p_{\delta})x - (a_{\pi} + a_{\delta}) - (t_{\pi} + t_{\delta}) < 0$$

만약 분쟁조정 후 소송에서 원고가 얻는 순기대이익이 음(-)의 값을 갖는 때에는 분쟁조정에서 패한 원고는 분쟁을 종료한다.

나. 편면적 분쟁조정이 사전적으로 강제되는 경우

기본적인 구조는 '구속적인 분쟁조정이 사전적으로 강제된 경우'와 동일하

지만, 분쟁조정 결과의 수용 여부를 원고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분쟁조정에서 원고가 승리한 경우 원고는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이지만, 패배하게 되면 원고는 자신의 기대수익에 따라 소송 제기, 피고와의 화해 시도, 혹은 분쟁의 종료를 선택할 수 있다.

1) 분쟁조정이 재판의 결과를 완전히 예측하는 경우

편면적인 분쟁조정이 사후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쟁조정 후 소송은 발생하지 않는다. 재판의 결과가 분쟁조정의 결과와 동일하므로 분쟁조정에서 원고가 승리하는 경우 화해가 성립하고, 분쟁조정에서 원고가 패배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분쟁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즉각적인 화해는 분쟁조정의 순기대가치가 음(-)의 값을 갖는 경우에 발생한다. 분쟁조정과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승소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분쟁조정 후 화해보다 즉각적인 화해가 항상 파레토 우월하고, 그 결과 분쟁조정 후 화해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2) 분쟁조정이 재판의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

예측력이 전무한 비구속적인 분쟁조정이 사전적으로 강제될 때에는 분쟁조정 후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있는 원고, 즉 분쟁조정 후 소송으로부터 양(+)의 순기대이익을 얻는 원고만 분쟁조정을 이용할 유인이 있었다. 그러나 편면적인 구속력이 부여된 분쟁조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결과를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에게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 후 소송의 순기대이익에 관계없이 분쟁조정의 순기대이익이 양(+)의 값을 가지면 원고는 분쟁조정을 이용할 유인이 존재한다.

분쟁조정에서 원고가 패배하는 경우 원고는 분쟁의 포기, 분쟁조정 후 소송, 분쟁조정 후 화해를 선택할 수 있다. 분쟁포기는 분쟁조정 후 소송으로부터 원고가 음(-)의 순기대이익을 얻는 경우에 발생하며, 그렇지 않은 원고는 분쟁조정 후 소송이나 화해를 선택할 것이다. 무엇이 선택될 것인지는 각 분쟁해결 방법이 제공하는 순기대가치의 크기에 의존한다.

즉각적인 화해는 분쟁조정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가 얻는 순기대이익이 양(+)의 값을 갖고, 분쟁조정의 순기대가치와 분쟁조정 후 소송의 순기대가치가 동시에 음(-)의 값을 갖는 경우에 발생한다.

$$E_{\pi}^N - E_{\delta}^N = (q_{\pi} - q_{\delta})x - (a_{\pi} + a_{\delta}) < 0,$$

$$E_{\pi}^T - E_{\delta}^T = (p_{\pi} - p_{\delta})x - (a_{\pi} + a_{\delta}) - (t_{\pi} + t_{\delta}) < 0$$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욱 2006.1
-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현수 2006.3
-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 2006-4 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경희 2006.12
-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장희, 김동겸 2007.1
- 2007-2 민영건강보험료율 결정요인 분석 / 조용운, 기승도 2007.3
- 2007-3 퇴직연금 손·익 위험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07.3
- 2007-4 확률적 프런티어 방법론을 이용한 손해보험사의 기술효율성 측정 / 지홍민 2007.3
- 2007-5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 안철경, 기승도 2008.1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3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1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혜은 2009.3

■ 조사보고서

-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 조재현, 박정희 2006.3
- 2006-2 주요국 방카슈랑스의 운용사례 및 시사점 / 류건식, 김석영, 이상우, 박정희, 김동겸 2006.7
- 2007-1 보험회사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류건식, 장이규, 이경희, 김동겸 2007.3
- 2007-2 보험회사 브랜드 전략의 필요성 및 시사점 / 최영목, 박정희 2007.3
- 2007-3 200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오승철 2007.3
- 2007-4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 류건식, 이상우 2007.4
- 2007-5 지적재산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7.10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역,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 2009.3

■ 정책보고서

- 2006-1 200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6.12
- 2006-2 의료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에 대한 연구 / 차일권, 오승철 2006.12
- 2007-1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 류건식, 이경희 2007.2
- 2007-2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 차일권, 이상우 2007.3
- 2007-3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의 효율체계에 관한 연구: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봉주 2007.3
- 2007-4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 김성태 2007.3
- 2007-5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안철경, 기승도, 이경희 2007.4
- 2007-6 200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7.12
- 2008-1 민영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조용운, 김세환 2008.3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2009.3 이경희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2009.3 이기형, 한상용

■ 연구논문집

-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1호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2호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영문발간물

-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1호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6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6.10
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7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7.9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0호 선진 보험사 재무공시 특징 및 트렌드(유럽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장이규 2006.11
- 21호 지급여력 평가모형 트렌드 및 국제비교 / 류건식, 장이규 2006.11
- 22호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 안철경, 오승철 2006.12
- 23호 미국과 영국의 손해보험 직관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 안철경, 기승도 2007.7
- 24호 보험회사의 자본비용 추정과 활용: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이경희 2007.7
- 25호 영국손해보험의 행위규제 적용과 영향 / 이기형, 박정희 2007.9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CEO Report

- 2006-1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6. 1
- 2006-2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 / 보험연구소 2006.1
- 2006-3 생보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2
- 2006-4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6.2
- 2006-5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6 보험사기 관리실태와 대응전략 / 정보통계본부 2006.3
- 2006-7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8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6.4
- 2006-9 날씨위험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4
- 2006-10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손익관리를 중심으로- / 손해보험본부 2006.5
- 2006-11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6.5
- 2006-12 장기간병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방향 / 보험연구소 2006.6
- 2006-13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 보험연구소 2006.7
- 2006-14 생명보험 가입형태별 위험수준 분석 / 리스크·통계관리실 2006.8
-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 2006-16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9
- 2006-17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현황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10
- 2006-18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 2007-1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 보험연구소 2007.4
- 2007-2 외국의 협력정비공장제도 운영현황과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7.4
- 2007-3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 보험연구소 2007.6
- 2007-4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 보험연구소 2007.7
- 2007-5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과 관련한 주요 이슈 검토 / 보험연구소 2007.11
- 2007-6 자동차보험 시장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7.11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정기간행물

■ 계간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금융연구 (년3회 ₩ 30,000) -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 보험동향 (계간 ₩ 2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동향 (계간 ₩ 2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5,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 지로번호 : 6360647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저 자 약 력

오 영 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
현 한국보험학회 이사
현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
(E-mail : ysoh@kiri.or.kr)

김 경 환

승실대학교 경영학 박사
현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 수석연구원
(E-mail : khkim@kiri.or.kr)

이 종 욱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현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원
(E-mail : bumiugj@kiri.or.kr)

정책보고서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발행일 2009년 3월 일
발행인 나 동 민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02) 368-4400

ISBN 978-89-5710-077-6

정가 10,000원